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의 근거로 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추가함(안 제25조 제1항).

II. 검토의견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